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56486 취등록세반환청구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redacted]도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가단23928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9.
판 결 선 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2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5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6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1행의 '각 1/2 지분'을 '각 D의 공유지분'으로 고치고, 제5면 제18 내지 20행의 '(원고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특약상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민

판사 김지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16

판사 류일건